

왕실 의례를 위한 발기[件記]의 제작과 특성

- 1882년 왕세자 가례를 중심으로 -

Produc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Checklists for Royal Ceremony

- Focusing on Wedding Ceremony of the Crown Prince in 1882 -

김 봉 좌 (Kim, Bong Jwa)*

◁ 목 차 ▷

- | | |
|-------------------------|------------------|
| 1. 서 론 | 3. 발기의 제작 배경과 특성 |
| 2. 발기의 명칭과 종류 | 3.1 제작 배경 |
| 2.1 발기의 명칭 | 3.2 자료적 특성 |
| 2.2 가례 절차에 따른
발기의 종류 | 4. 결 론 |
| | <참고문헌> |

<초 록>

본 연구는 왕실 의례를 위하여 제작한 발기의 제작 배경과 자료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사례 연구로서 1882년 왕세자 가례에 주목하였다. 발기는 옛한글로 ‘별기’, 한자로는 ‘件記’라고 쓰며 각종 물품 등의 내역을 하나하나 열거하여 쓴 목록형 자료를 가리킨다. 1882년(고종 19) 왕세자 이척(李埈: 純宗, 1874~1926)의 가례를 위하여 제작한 발기를 살펴보면, 가례의 각 절차에 소용된 구체적인 물품의 내역과 이에 직접 관여한 내인(內人)이나 내관(內官)들의 명단이 대부분이다. 주로 음식, 복식, 기물, 명단으로 한정되며, 해당 기록의 실상과 연계되는 기록이다. 동일한 내용을 한글과 한자로 표기만 다르게 쓴 자료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내인들의 한글본에 의거하여 내관들이 한자본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또 다른 한자본이 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발기의 제작 배경은 왕실 물품의 조달 체계와 관련이 깊다. 발기의 구체적인 기록들은 등록(謄錄)이나 의례(儀軌)와 차별되는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며 왕실 문화 연구의 주요 연구 자료가 된다.

要語: 발기, 왕실, 의례, 왕세자 가례, 내인, 내관, 한글 문헌

* 한국학중앙연구원(likecho@naver.com)

접수일: 2016년 3월 7일 최초심사일: 2016년 3월 12일 심사완료일: 2016년 3월 25일

<ABSTRAC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wedding ceremony of the crown prince in 1882 as a case study to investigate the production background and phil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checklists stored at Jangseogak Archives.

Checklists, written as “balgi” (불기) in old Korean and “geon-gi” (件記) in Chinese, are a unique type of documentation in that they enumerate detailed descriptions of each and every thing or people on the list, a form rarely found in transcribed records (謄錄) or ritual protocols (儀軌).

An examination of the checklists on the 1882 wedding ceremony of Crown Prince Yi Cheok (李坫: 純宗, 1874-1926) reveals that most of the checklist contents contain specific descriptions of goods used and a list of court maids (內人) and eunuchs (內官) who were directly involved in each stage of the ceremony.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more than one checklist was produced on the same subject matter in those days using Korean or Chinese notations, depending on the purpose and checklist drafters. In addition, there were several Chinese versions with notations in different characters.

The study of royal checklists is significant in revealing not only aspects of royal rituals but also the role of the people involved and the notations they actually used.

Key words: Balgi(件記), Checklist, Royal Ceremony, Crown Prince, Wedding, Court Maid, Eunuch, Han-geul Manuscript

1. 서론

왕실 자료 가운데 특이한 것으로 발기[件記]¹⁾가 있다. 발기는 주로 왕실 의례에 소용되는 각종 물품의 명칭이나 인명 등을 하나하나 나열하여 쓴 낱장 자료로서 일반적인 고문서와는 서식부터 확연히 다르다. 게다가 알록달록한 색상의 두 겹고 큰 종이를 여러 장 이어 붙여서 길게 만든 뒤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하므로 외관상 눈에 띄지 수밖에 없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왕실 발기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경상대학교 문천각에 현전한다. 수량으로 비교해보면 장서각 950점, 문천각 206점, 서울역사박물관 7점, 국립문화재연구소 4점, 국립민속박물관 3점으로 장서각에 압도적으로 많은 수량의 발기가 있다.²⁾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왕실 발기의 제작 배경과 문헌적 특성을 규명하기에 적합한 연구 대상으로서 장서각 자료에 주목하였다.

장서각 소장 왕실 발기는 1981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관되기 전까지 창경궁 장서각에 보관되어 있었다. 여기서 1950년대 말 자료 정리를 시작으로 궁중 풍속 연구의 주요 자료로서 학계에 알려졌다.³⁾ 당시 연구에서는 내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자료적 가치와 분석에 역점을 두었고 내용에 따른 분류를 시도하였다. 즉, 국혼(國婚)·관례(冠禮)·대왕대비 및 왕대비의 존호(尊號)·다례(茶禮)·상격(賞格)·평상시 등으로 구분한 뒤 각 의례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명단 등으로 다시 세분화하였다. 예를 들면 국혼 관계 발기는 간택 과정에서의 복식·음식·예물, 동궁 내외의 의대·금침·패물, 가례시의 진상 및 직무 분장, 길례 관계 등으로 나누어 분류하는 식이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왕실 발기는 왕실의 무속, 보자기, 음식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자료로서 주목받기

1) 발기의 본래 명칭은 ‘별기’ 즉 ‘件記’이다. 본고에서는 현대 한글 표기법에 따라 ‘발기’라고 쓴다.

2) 김봉좌, “왕실 한글 필사본의 전승 현황과 가치,” 『국어사연구』 제20호(2015), 39-64.

3) 金用淑, “宮中『撥記』의 研究: 宮中 用語 研究 續 - 資料 揭示를 主로 하여 -, ” 『향토서울』 제18호(1963), 79-169.

金用淑, 『朝鮮朝 宮中風俗 研究』 (서울: 一志社, 1987), 372-413.

시작했다.⁴⁾ 그리고 『장서각이왕실고문서목록』과 『고문서집성』⁵⁾을 통해 왕실 발기의 서지사항 및 영인본이 공개된 뒤에는 학술적 관심과 활용도가 한층 더 높아졌다. 특히 복식 분야의 연구가 두드러졌으며⁶⁾ 한글 문헌, 출산 문화, 음식, 차차표기, 서예 등 다양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⁷⁾

-
- 4) 崔吉成, “宮中巫俗資料,” 『韓國民俗學』 제2집 1호(1970), 125-148.
 崔吉成, “韓末의 宮中巫俗: 宮中 「발기」를 중심으로,” 『韓國民俗學』 제3집 1호(1970), 55-80.
 許東華, “朝鮮王朝後期の 官裾 研究,” 『美術史學研究』 제152호(1981), 34-45.
 이성우, “조선조의 궁중음식간기에 관한 고찰,”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제3집 1호(1988), 29-49.
 이성우, 한복진, “조선조 궁중 탄생상 발기의 분석적 연구,”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제4집 1호(1989), 21-37.
- 5) 『藏書閣李王室古文書目錄』(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7).
 『古文書集成』 12~13(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4).
- 6) 박성실, “전통 아기옷에 관한 실증적 고찰,” 『韓國服飾』 제18호(2000), 43-98.
 權惠珍, “당의에 관한 연구 - 궁중발기와 유물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
 이명은, “『궁중불기』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 연구 - 장서각 소장품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3).
 金明宣, “조선후기 궁중발기에 나타난 가례복식과 길례복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4).
 박혜진, “조선시대 후기 궁중패물 연구 - 「궁중발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6).
 안애영, “1882(壬午)年 王世子 嘉禮 研究 - 「가례도감의궤」와 「궁중불기」를 중심으로 -,” 『藏書閣』 제22집(2009), 107-137.
 이민주, “궁중발기를 통해 본 왕실의 복식 문화: 임오가례시 생산체제를 중심으로,” 『韓服文化』 제14집 2호(2011), 121-140.
 정아영, “19세기 이후 궁중예단패물의 디지털화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제35집(2012), 451-456.
- 7) 김봉좌, “조선후기 궁묘 제사 관련 한글문헌의 문헌적 특징,” 『국어사연구』 제10호(2010), 133-172.
 김지영, “조선후기 왕실의 출산문화에 관한 몇 가지 실마리들 - 장서각 소장 출산 관련 ‘궁중발기[宮中件記]’를 중심으로 -,” 『藏書閣』 제23집(2010), 3-34.
 김봉좌, “조선시대 유교의례 관련 한글문헌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1).
 이지영, “장서각 소장의 탄일 발기에 대한 고찰,” 『정신문화연구』 제35집 3호(2012), 269-300.
 주영하, “조선왕조 궁중음식 관련 고문헌 자료 소개,” 『藏書閣』 제30집(2013), 422-428.
 박부자, “왕실발기에 나타난 복식 관련 어휘 차차표기의 한자 운용에 대한 연구,” 『국어학』

그러나 정작 발기의 자료적 성격과 제작 배경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문헌학적 연구는 활성화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서지 조사를 비롯한 기초적인 자료 정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장서각이왕실고문서목록』에서 왕실 발기 950점에 대한 개별 자료 명칭과 크기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분류 또한 기존 연구와 달리 기록 물품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의대(衣帶)·의대차(衣帶次)·의복(衣服)·의차(衣次)·금침(衾枕)·주단(紬緞)·도침(擣砧)·도련(擣鍊)·보(褌)·예단패물(禮緞佩物)·문구병풍(文具屏風)·기명(器皿)·사찬(賜饌)·반사물(頒賜物)·상격(賞格)·진찬(進饌)·진상(進上)·진향(進香)·다례(茶禮)·위축(爲祝)·제수(祭需)·차비관(差備官)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발기의 내용적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유리하지만, 진상단자·간택단자·택일기 등 발기와 성격이 다른 자료들도 다수 포괄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발기에 대한 전면적인 서지 조사와 함께 명확한 기준 정립을 통한 재분류가 시급하다.⁸⁾

문헌학적 연구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발기의 제작 배경이 되는 ‘조선 왕실’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왕실 발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제작 주체로 짐작되는 왕실의 실무자 즉 내관과 내인 등의 조직 규모 및 업무를 비롯하여 왕실 내의 물품 조달 및 관리, 왕실 의례 등에 이르기까지 연구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 역사학, 경제학, 종교학에서 조금씩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발기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짚어낼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연구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발기의 문헌학적 연구를 진척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제한적으로나마 특정 사례에 해당하는 발기들을 선별하여 그 특성들을 분석함으로써 제작 배경을 유추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장서각 소장 왕실 발기를 제작 시기와 행사별로 분류하였고, 그 중에서

제75집(2015), 335-372.

최영희, “조선시대 한글 發記의 서예사적 意義 및 궁체의 典型 모색: 장서각 소장 丙寅발기 및 壬午발기를 중심으로,” 『서예학연구』 제27집(2015), 324-362.

8) 장서각 소장 발기에 대한 전면적인 서지 조사는 2012년 이후 장서각 연구원들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藏書閣所藏 古文書大觀 7』(2016년 발간 예정)부터 반영된다.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1882년 2월에 거행한 왕세자 이척(李适: 純宗, 1874~1926)의 가례에 주목하였다. 해당 발기들은 가례의 여러 절차에서 소용되는 각종 물품들의 종류 및 수량뿐만 아니라 관련 내인(內人)이나 내관(內官)들의 명단 등도 포함하여 비교적 내용이 다양하다. 게다가 당시 가례의 전반적인 내역을 기록한 『왕세자가례등록』과 『왕세자가례도감의궤』⁹⁾를 참조할 수도 있다.

본고는 발기에 대한 실증적인 사례 연구로서 그 제작 배경과 자료적 특성을 규명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1882년 왕세자 가례의 절차에 따라 발기들을 분류한 뒤 각 자료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그 제작 배경을 가늠해 보았다. 그리고 원문의 비교 분석을 통한 서식, 표기, 용도, 작성 시기 등을 파악함으로써 자료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비록 왕실 의례를 위하여 제작한 발기에 국한된 연구지만, 발기의 문헌학적 가치를 환기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2. 발기의 명칭과 종류

2.1 발기의 명칭

장서각 소장 왕실 발기는 유독 왕세자 이척(李适: 純宗, 1874~1926)과 관련된 것이 많다. 고종과 명성황후 민씨 사이에서 태어난 이척은 1874년(고종 11) 2월 8일에 탄생한 뒤 이듬해 2월 곧바로 왕세자로 책봉될 만큼 각별한 관심 속에서 성장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왕실 발기 또한 왕세자의 탄생, 책례, 입학례, 관례, 가례 등 각종 의례를 위하여 제작되었다. 그 중에서도 1882년(고종 19) 2월 민태호(閔台鎬)의 딸을 왕세자빈으로 맞이하는 가례를 위한 것이 총 58건으로 가장 많다.

가례는 다른 왕실 의례와 달리 간택부터 별궁, 육례, 시상 등에 이르기까지 두세 달에 걸쳐 거행하는 가장 큰 규모의 행사다. 따라서 여기에 동원되는 인원과

9) 『王世子嘉禮膳錄』(1882), 1책, 장서각 K2-2683.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1책, 장서각 K2-2678 / 규장각奎13174~13178.

왕실 의례를 위한 발기[件記]의 제작과 특성

물자 또한 막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실상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자료가 바로 발기다. 등록이나 의례의 기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그 기록의 방대함은 발기의 크기에 여실히 드러난다. 세로 길이는 24~34cm로 일정하고, 가로 길이는 20~1,354cm로서 편차가 크지만 평균 약 284cm로 꽤 길다. 가로 10~50cm 길이의 종이를 여러 장 이어 붙여서 만든 결과다. 그리고 보관의 편의를 위하여 둥글게 말아서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고, 두루마리의 겉면에 해당 자료의 명칭을 기록하였다.



<도 1> 두루마리 형태의 왕실 발기

개별 발기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두루마리의 겉면 즉 본문을 기록한 면의 반대편에 자료의 명칭을 기재한 것이다. 자료의 명칭은 작성 시기 혹은 유관 행사의 시기, 행사명, 본문 내역, 자료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교적 상세하다. 그 덕분에 기존 연구에서 유관 행사와 기록 내역으로 분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본고에서 ‘1882년 왕세자 가례를 위한 발기’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 또한 자료 명칭을 통한 주제별 선별 과정을 거친 결과다. 자료 명칭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¹⁰⁾

10) 본고에서는 개별 발기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장서각이왕실고문서목록』에서 명시한 청구기호를 ‘【발기○○○○】’와 같은 형식으로 기입하였다.

<표 1> 가례 관련 발기의 자료 명칭

시기	행사명	본문 내역	유형
壬午正月十五日	初揀擇時	進御床 賓床 處子床	件記 【발기1894】
임오	천만세동궁마마 가례시 직간택 후 보니오실	빈궁마누라 의디	불기 【발기961】
임오	천만세동궁마마 가례시	빈궁마누라 의디 침방의 문저허라 주오신	불기 【발기965】
壬午二月	千萬歲東宮媽媽 嘉禮時	器皿	發記 【발기1720】
임오이월	가례시 도현례	각 즈비관	불기 【발기1690】
壬午二月	嘉禮後 初次 宗廟 景慕宮 廟見禮敎是後	媽媽 嬪媽媽 古風 賞格	件記 【발기1571】

자료 명칭은 맨 앞에 해당 시기를 쓰고 행사명과 본문 내역을 이어서 쓴 뒤에 자료의 유형 즉 ‘件記’·‘불기’·‘發記’로 끝맺고 있다. 여기서 시기는 발기의 작성 시기가 아니라 해당 행사의 거행 시기를 기준으로 표기한 것이 특징이다. 1월 15일 초간택(初揀擇), 2월 조현례(朝見禮)는 모두 가례의 일부분으로 실제 거행 일자를 기록하였다. 다만 【발기1571】은 3월 6일에 거행한 ‘묘현례(廟見禮)’가 아니라 2월의 ‘가례’를 기준으로 시기를 표기한 점이 특이하다. 1882년 왕세자 가례는 1월의 삼간택을 거쳐 2월에 납채부터 친영, 동퇴연, 조현례까지 본식을 모두 거행한 뒤 3월 6일에 종묘·영녕전·경모궁에 차례로 전알하는 묘현례를 거행하였다. 즉, 자료 명칭에 시기가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행사명을 쓰면서 그 기준이 모호했던 탓이다. 그러나 해당 시기와 행사 명칭을 명확하게 기재하였으며, 이 점이 발기의 자료적 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본문 내역은 ‘進御床 賓床 處子床’, ‘빈궁마누라 의디’, ‘器皿’, ‘각 즈비관’, ‘古風 賞格’으로 명시하여 각각 음식 상차림, 세자빈 의대(衣襟), 그릇, 차비관(差備官), 상격(賞格) 즉 시상 내역에 관한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상차림은 음식명과 수량, 세자빈의 의대는 복식명과 수량, 기명은 그릇명과 수량, 차비관은 명단과 인원수,

상격은 시상 옷감의 종류 및 수량을 기재한 것이다. 주로 음식, 복식, 기물, 명단, 옷감 등에 대한 상세 내역이다. 이러한 내용적 편향성은 연구 대상 이외의 발기도 마찬가지다. 이는 발기의 자료적 특성을 밝히는 데 주요 단서가 된다.

우선 자료 유형으로 명시된 ‘件記’, ‘널기’, ‘發記’의 명칭부터 살펴보자. ‘件記(건기)’는 물건의 가짓수를 헤아리는 수량 단위 명사 ‘件(건)’에서 파생한 명사로서 물건의 명칭과 수량을 상세하게 쓴 기록물을 지칭한다. 이는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이두(吏讀)’ 관련 자료에 보이며, 한글로는 ‘널기’, ‘별기’, ‘별기’로 표기하였다. ‘널기’의 ‘널’은 ‘襲(습)’, ‘件(건)’ 등에 대응하는 우리말 용어로서 지금의 수량 단위 명사 ‘벌’의 어원이다.

件

分別物數名件 條件

『全韻玉篇』(1796)

俗號物數曰若干件 物別也 條件

『字類註釋』(1856)¹¹⁾

件記

널기

『古今釋林』 ‘羅麗吏讀’(1789)

별기

『五洲衍文長箋散稿』 ‘語錄辨證說’(19C)

별기

『儒胥必知』 ‘吏讀彙編’(1872)¹²⁾

널

옷 혼 널: 衣一襲

『三綱行實圖』(1481)

네 몇 브를 밍굴일다: 你打幾件兒

『朴通事諺解』(1677)

다섯 널 칼을: 五件兒刀子

『朴通事諺解』(1677)¹³⁾

즉, 발기는 물품의 가짓수를 헤아리는 ‘널’에서 파생한 용어로서 한글로는 ‘널기’, 한자로는 ‘件記’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 ‘별기’는 ‘널’이 ‘벌’로 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기이며, ‘별기’는 ‘별기’의 오기로 보인다. 또 ‘發記’, ‘撥記’, ‘拔記’ 등으로

11) 南廣祐, 『古今漢韓字典』 (인천: 仁荷大學校出版部, 1995), 24.

12) 『吏讀資料選集』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5).

이명은(2003), 7.

13) 劉昌惇, 『李朝語辭典』 (서울: 延世大學校出版部, 1964), 353.

南廣祐, 『教學古語辭典』 (서울: 教學社, 1997), 753.

표기한 예가 있으나, 이는 ‘불기’와 음가가 비슷한 한자를 차용하여 쓴 것일 뿐 정식 표기는 아니다. 발기의 정확한 표기와 개념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이미 정리한 바 있으나, 학계에 알려지지 않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件記 <불기>

고금석립에서는 <불기>라고 하였으니 현대어 <발기>에 해당하다. 어떠한 필요에 응해서 물건의 품종 및 분량을 적은 것이니 <혼수 발기>, <장례 발기> 등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件記도 어록변증에서는 <불기>, 유서필지에서는 <별기>라고 읽고 있다. 그것은 현대어에서 의복이나 기타 물건의 계산 단위로 쓰고 있는 <벌>과 일치한다. 본래 이 <벌>도 옛날에는 <불>로 말했다. 박통사언해 상권에서 你打幾件兒을 <네 몇 불을 만들다>, 這五件兒刀子를 <이 다섯 불 칼을>과 같이 번역한 것이 바로 그러한 증거다.¹⁴⁾

발기는 그 어원과 개념이 모두 물건을 기반으로 하므로, 각종 물품의 목록을 지칭하는 ‘물목(物目)’과 겹칠 수밖에 없다. 모두 물품의 명칭과 수량을 기록한 문헌을 지칭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 용례가 조금 다르다. 발기는 정식 문서의 명칭으로 쓰이고, 물목은 기록 내용의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로 쓰인다. 그 용례는 의례에서 찾을 수 있다.¹⁵⁾ 뿐만 아니라 발기는 인명을 표기한 기록물 즉 명단까지도 포괄하므로 개념이 좀 더 넓다.¹⁶⁾ 즉, 발기는 ‘인명, 물품명, 음식명 등을 그 수량과 함께 낱낱이 열거하여 기록한 자료’로 정의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발기는 두루마리 길면의 자료 명칭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동일한 내용의 표기만 다른 한글본과 한자본이 함께 전함으로써 그 표현의 차이에서도 실마리가 보인다. 특히 발기의 구체적인 작성 시점을 가늠하게 하는 문구가 그러하다. 한자본의 자료 명칭에는 해당 행사명 뒤에 붙는 ‘時’나

14) 홍기문, 『이두 연구』 (평양: 과학원출판사, 1957), 95.

15) 『殯殿都監儀軌』(1720), 啓辭秩, 庚子 6월 11일. “使司謁, 慈教內, 靈寢平牀, 雖有前例, 自內待令, 勿爲措備, 凡于措備之物, 限發靚內入之物, 別錄書入, 素衿楮, 不拘高樣, 便於侍衛, 爲先二寸減除, 已上書單子, 以件記內入. 殯殿都監限發靚內入物目列錄.”

『嘉禮都監儀軌』(1802), 傳教, 壬戌 9월 초4일. “嘉禮都監別單. 別宮進排, 物目件記, 一房舉行後皆倣此.”

16) 『中宗實錄』 16년 10월 14일. “處謙又供, 宋祀連所納臣之手書人名件記內, ……”

‘後’ 이외에는 시제가 없으나, 한글본의 경우에는 이와는 별도로 미래형의 ‘~호오실’이나 과거형의 ‘~호오신’과 같은 시제가 보인다. 앞의 표에서 제시한 【발기961】의 ‘임오 천만세 동궁마마 가례시 직간택 후 보너오실 빈궁마누라 의디 불긔’, 【발기965】의 ‘임오 천만세 동궁마마 가례시 빈궁마누라 의디 침방의 몬져하라 주오신 불긔’가 대표적인 예다. 이를 통해 발기가 해당 행사 이전에 미리 작성하기도 하고, 혹은 사후에 작성한 것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은 가례의 절차 거행과 함께 제작된 발기의 종류를 살펴보고 개별 발기의 원문 비교 분석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규명해보고자 한다.

2.2 가례 절차에 따른 발기의 종류

1882년(고종 19) 2월의 왕세자 가례를 위하여 제작한 발기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당시 가례의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발기의 제작 배경 및 내용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상 자료 58건의 발기들을 가례의 절차에 의거하여 분류하고 개별 발기의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가례의 절차는 왕세자빈을 정하는 간택(揀擇)부터 시작한다. 세 차례의 간택으로 정해진 왕세자빈은 별궁(別宮)에 머무르며 혼례 준비의 시간을 갖는다. 혼례의 본식은 육례(六禮)로 통칭하는데, 혼약의 의미로 기러기를 보내는 납채(納采), 예물을 보내는 납징(納徵), 혼례 날짜를 알리는 고기(告期), 왕세자빈을 책봉하는 책빈(冊嬪), 왕세자가 왕세자빈을 궁궐로 맞이하는 친영(親迎), 왕세자와 왕세자빈이 술잔을 나누는 동뢰연(同牢宴)을 가리킨다. 이후 왕세자빈이 왕실 어른을 뵙는 조현례(朝見禮)와 종묘 등을 배알하는 묘현례(廟見禮)를 거행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끝난다. 그리고 가례의 준비 및 거행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시상(施賞)으로 마무리한다. 이에 따라 가례 절차의 성격에 의거하여 해당 발기들을 간택, 별궁, 육례, 시상 네 부분으로 분류하고, 그 본문 내용에 따라서 각각 음식, 복식 및 패물, 기물 및 금침, 명단으로 구분하였다.

<표 2> 현전하는 ‘1882년 왕세자 가례 관련 발기’의 개요

내용 \ 절차	간택	별궁	육례	시상	계
음식	2	-	-	-	2건
복식·패물	5	13	-	-	18건
기물·금침	1	7	-	-	8건
명단	2	-	9	19	30건
계	10건	20건	9건	19건	58건

1882년 왕세자 가례에 대한 논의는 1881년(고종 18) 11월 15일에 시작되었다. 왕세자의 성균관 입학 시기를 이듬해 봄으로 정하면서 관례와 가례도 함께 거행하도록 명한 것이다.¹⁷⁾ 이에 따라 왕세자는 1882년 1월 10일에 성균관에 입학하고 곧이어 20일에 관례를 치렀으며, 2월 21일에 가례를 거행하였다. 그리고 묘현례와 시상 등으로 3월이 되어서야 모든 절차가 끝났다. 당시 의례 기록에 따르면 3월 15일 즈음에는 관련 문서들도 갈무리한 듯하다.¹⁸⁾ 이로 볼 때 발기의 제작 시기는 대략 1881년 11월에서 1882년 3월 사이로 짐작할 수 있겠다.

2.2.1 간택을 위한 발기

1881년 11월 15일, 왕세자 가례를 결정한 뒤 곧바로 왕세자인 간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우선 8세의 왕세자에 걸맞도록 7~11세로 연령을 제한하여 처자의 혼례를 금하는 금혼령(禁婚令)을 전국에 내렸다. 그리고 한성부를 비롯한 지방 관청을 통하여 해당 처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단자(單子)를 올리도록 하였는데, 기한은 거리에 따라서 짧게는 11월 25일, 길게는 12월 10일로 정하였다.¹⁹⁾ 그 결과 한성부 30장, 수원과 여주 각 1장으로 총 32장의 단자를 거두

17) 『王世子嘉禮謄錄』(1882), 辛巳 11월 15일 ;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傳教, 辛巳 11월 15일.

18)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一房儀軌, 稟目, 壬午 3월 15일. “本房所用各樣物種實入與用還之類, 區別後錄, 仰稟爲去乎, 依例會減之意, 移文戶曹, 何如. 手決內依.”

19) 『王世子嘉禮謄錄』(1882), 辛巳 11월 15일. “曹啓辭傳曰, 世子嘉禮, 當以明春行之, 自七歲

었고,²⁰⁾ 32명 처자의 인적 사항을 정리하여 『간택단자(揀擇單子)』로 제작하였다. 당시 제작한 『간택단자』가 현재 장서각에 총 3종이 전하는데,²¹⁾ 처자의 생년월일을 비롯하여 본관, 거주지, 사조(四祖: 父·祖·曾祖·外祖)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6명은 병환으로 불참하여 초간택에는 모두 26명의 처자가 입궐하였다.²²⁾

간택은 세 차례에 걸쳐 초간택은 1882년 1월 15일, 재간택은 1월 18일, 삼간택은 1월 26일에 진행하였다.²³⁾ 당시 간택을 위하여 제작한 발기는 10건으로, 음식·복식·기물·명단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표 3> 간택 관련 발기 목록

절차	내역	자 료 명	비고
초간택	음식	【발기1894】 壬午正月十五日 初揀擇時 進御床賓床處子床 件記	
	옷감	【발기1152】 壬午正月 嘉禮時 揀擇處子 衣次 【발기1119】 임오 가례시 송헌 김참판딕 니참판딕 의족 불긔	
	기물	【발기1757】 壬午 初揀擇時 洪祐夷家	
재간택	음식	【발기1331】 壬午正月十八日 再揀擇 進御床賓床處子床 發記	
	왕세자빈 의대	【발기961】 임오 천만세 동궁마마 가례시 직간딕 후 보닉오실 빈궁 마누라 의딕 불긔	동일본
		【발기989】 임오 천만세 동궁마마 가례시 직간딕 후 보닉오실 빈궁 마누라 의딕 불긔	
삼간택	왕세자빈 의대	【발기966】 임오 천만세 동궁마마 가례시 삼간딕시 빈궁마누라 의딕 불긔	
	내인 명단	【발기1545】 壬午正月 三揀擇 宮內人 賞格 件記	동일본
		【발기1528】 壬午正月 三揀擇時 宮內人 賞格 件記	

至十一歲處子禁婚事，命下矣。自今日依例禁婚嫁事，分付京外，當爲捧單，而京中則今十一月二十五日，外方近道同月三十日，中道來十二月初五日，遠道同月初十日定限，捧單上送事，撥馬行會，國婚禁限外許婚諸條別單書入之意，敢啓。傳曰，知道。”

20) 『王世子嘉禮贈錄』(1882), 辛巳 11월 20일~壬午 1월 13일.

21) 장서각 소장 『간택단자』 3종은 서식, 표기, 장정 등 다른 점이 많다. 본문에 기재된 처자의 나이를 통해 단자의 작성 시기를 판별할 수 있는데, 1881년에 낱장의 한자본(왕실고문서 1756)과 첩장의 한자본(K2-2611), 1882년에 첩장의 한글본(K2-2612)을 작성하였다.

22) 『王世子嘉禮贈錄』(1882), 辛巳 11월 20일~壬午 1월 13일.

23)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舉行日記.

초간택과 재간택의 경우에는 입궐한 처자를 비롯하여 왕실 구성원, 관원, 손님들의 구성을 살필 수 있는 발기가 각각 전한다. 초간택은 1월 15일 손시(08:30~09:30)에 창덕궁 대조전(大造殿)에서 진행하였으며, 26명의 처자들은 요금문(曜金門)을 통해 들어오도록 하였다.²⁴⁾ 【발기1894】는 초간택을 위하여 마련한 상차림 내역에 관한 것으로, 대왕대비 조씨[신정왕후], 왕대비 홍씨[효정왕후], 대전[고종], 중전 민씨[명성왕후], 동궁을 위한 ‘어상(御床)’ 5상, 경빈 김씨[현종의 후궁, 순화궁]를 가리키는 ‘자가(自家)²⁵⁾’, 운현궁에 사는 흥선대원군 내외를 가리키는 ‘운현(雲峴)’ 2상, 손님들을 위한 ‘빈상(賓床)’ 30상, 간택단자 수합을 담당한 ‘한성판윤(漢城判尹)’과 ‘오부 관원(五部官員)’, 입궐한 처자들을 위한 ‘처자 26상’과 ‘진지 26상’으로 구분하여 각 상에 오르는 음식명을 열거하였다.

재간택은 1월 18일 오시(11:30~12:30)에 진행하였으며, 당시 상차림 내역은 【발기133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상 5상, 자가, 운현 2상, 한성판윤·오부관원은 초간택과 동일하나, 빈상이 15상으로 줄고 ‘아기씨(阿只氏)’를 위한 상을 별도로 마련한 점이 다르다. 아기씨를 위한 주물상과 진지상 각 1상, 처자들을 위한 상과 진지상 각 6상으로 구분하였는데, 특히 주물상에 오른 음식의 종류와 수량이 처자상과 확연히 다르다. 당시 재간택에 오른 처자가 7명²⁶⁾임을 감안한다면, ‘아기씨’는 곧 내정된 왕세자빈을 가리키며 재간택부터 이미 특별한 대우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별대우는 【발기961】과 【발기989】의 자료 명칭 가운데 ‘재간택 후 보내오실 빈궁마누라 의대’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재간택 후 보내오실’의 문구에서 재간택 이전에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삼간택 이전에 이미 ‘빈궁마누라’라고 지칭하며 의대를 특별히 보낸 점이 흥미롭다.

간택 대상 처자들에 대한 예우도 발기에서 찾을 수 있다. 【발기1152】는 ‘간택 처자 옷감(揀擇處子 衣次)’이라 하여 견마기[肩莫伊]·저고리[赤古里]·치마[裳]

24) 『王世子嘉禮贈錄』(1882), 辛巳 12월 9일 ;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傳敎, 辛巳 12월 9일.

25) 자가는 왕실에서 출가한 공주·옹주, 후궁들에 대한 칭호로서 한글로는 ‘자가’, 한자로는 ‘自家’라고 쓴다(金用淑(1987), 92-98).

26) 『王世子嘉禮贈錄』(1882), 壬午 1월 16일; 再揀擇時處子詣闕秩.

를 위한 옷감 내역에 관한 것이다. 주로 명주와 모시가 많은데, 이는 당시의 복식 제한과 부합한다. 간택 처자들의 옷감은 명주와 모시를 넘지 않고, 화장도 분만 바를 뿐 붉게 단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²⁷⁾ 【발기1119】는 송현의 김참판댁과 이참판댁에 하사하는 옷감의 내역으로, 【발기1152】와 구성이 비슷하여 동일한 시기에 작성한 것으로 보았다. 【발기1757】은 홍우석가(洪祐奭家)에 하사한 물품의 내역으로, 솜[雪綿子]·단목(丹木)·가위[剪刀]·인두[引刀]·삼작투호(三作投壺)가 열거되어 있다. 초간택 명단에 올랐던 홍우석의 여식에 대한 선물로 보인다.

마지막 삼간택은 1월 26일 손시(08:30~09:30)에 거행하였고, 입궐한 3명의 처자²⁸⁾ 가운데 좌찬성 민태호(閔台鎬)의 여식이 왕세자빈으로 간택되었다.²⁹⁾ 당시 왕세자빈에게 하사한 의대(衣櫛) 내역은 【발기966】에 보인다. 재간택 뒤에 보낸 【발기961】·【발기989】의 의대 내역에 비하여 수량과 품질이 월등히 다르다. 삼간택에 참여한 내인들의 명단도 발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발기1545】과 【발기1528】에 따르면 경우궁(景祐宮)·죽동궁(竹洞宮)·송현궁(松峴宮)·육상궁(毓祥宮)·용동궁(龍洞宮)·누동궁(樓洞宮)·저동궁(苧洞宮)에 배속된 상궁(尙宮) 등 내인과 청직(廳直)들이 동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왕세자빈 간택에 관해서는 해당 등록이나 의궤에도 일정 외의 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등을 알기 어려우므로, 현전하는 발기의 기록으로나마 상차림·복식·내인 명단 등의 내역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의미가 매우 크다.

2.2.2 별궁 시절의 발기

왕세자빈에 간택되면 곧바로 별궁으로 거처를 옮기고 혼례를 준비하는 시간을

27)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傳敎, 辛巳 11월 16일. “處子入來時衣服, 毋敢踰絀苧事. … 初揀擇時, 處子只塗粉, 而勿爲成赤事.”

28)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壬午 1월 25일: 王世子嬪三揀擇時處子詣闕秩.

29)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壬午 1월 26일;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傳敎, 壬午 1월 26일.

갖는다. 민태호의 여식은 삼간택 당일 신시(15:30~16:30)에 안궁동 별궁으로 들어가 2월 21일 친영례 전까지 약 한 달 간 머물렀다. 별궁은 왕세자빈의 임시 처소일 뿐만 아니라 왕세자빈이 책봉을 받는 수책례(受冊禮)와 왕세자가 직접 왕세자빈을 맞이하는 친영례(親迎禮)를 치르는 주요 의례 공간이었다. 그러므로 왕세자빈을 간택하기 전에 별궁수리소 감역관을 정하여 건물을 수리하기도 하고,³⁰⁾ 삼간택 이틀 전 1월 24일에는 기명(器皿)과 금침(衾枕) 등을 미리 배설해 두었다.³¹⁾ 그리고 28일에는 왕세자빈의 법복과 의대, 예물을 하사하였다.³²⁾ 이때 왕세자의 복식과 세자궁의 배설 또한 동시에 진행하였다. 이처럼 왕세자빈이 별궁에 머무르던 시절에 가례 준비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로 20건의 발기가 전한다.

<표 4> 별궁 시절의 발기 목록

구분	내역	자 료 명	비고
복식	왕세자 법복/의대	【발기1012】 壬午二月 千萬歲 東宮媽媽 嘉禮時 衣褥 件記	동일본
	왕세자빈 의대	【발기987】 임오 천만세 동궁마마 가례시 빈궁마누라 의디 불기	
		【발기988】 임오 천만세 동궁마마 가례시 빈궁마누라 의디 불기	
		【발기965】 임오 천만세 동궁마마 가례시 빈궁마누라 의디 침방의 몬저 허라 주오신 불기	동일본
		【발기985】 임오 천만세가례시 빈궁마마의디 불기 침방	
		【발기1010】 壬午 千萬歲 東宮媽媽 嘉禮時 嬪宮媽媽 衣褥 件記 單裏衣 奉只 腰帶	
		【발기1013】 壬午 千萬歲 嘉禮時 嬪宮媽媽 衣褥 件記 寢房	
		【발기1186】 壬午 嘉禮時 織組 件記	

30)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座日. “別宮修理所監役官 繕工監假監役申斗善[壬午正月十八日分差 二月二十一日至].”

31)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舉行日記. “二十四日, 敎命篆文二字入啓. 同日, 別宮進排, 世子宮器皿, 別宮器皿.[三揀擇前二日, 該房陪進, 領納別宮, 該房書物目單子, 同爲入之.]”

32)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舉行日記. “二十八日, 別宮禮物, 世子宮法服與衣褥, 嬪宮法服與衣褥, 世子宮進排.[三揀擇後第三日, 該房郎廳領納.]”

왕실 의례를 위한 발기[件記]의 제작과 특성

구분	내역	자 료 명	비고
패물	왕세자	【발기1242】 임오 천만세 동궁마마 가례시 통흉비침노리개 불긔	동일본
	왕세자빈	【발기1226】 壬午 千萬歲 東宮媽媽 嘉禮時 龍胸背枕珮物 件記	
	예물	【발기1227】 壬午 千萬歲 東宮媽媽 嘉禮時 龍胸背枕珮物 件記	
	왕세자빈	【발기1239】 임오 천만세 동궁마마 가례시 빈궁마누라 빈혀 노리개 불긔	
	패물	【발기1229】 壬午 千萬歲 嘉禮時 珮物 刀柄 脂環 件記 寢房	
기물 금침	기명	【발기1720】 壬午二月 千萬歲 東宮媽媽 嘉禮時 器皿 發記	동일본
		【발기1721】 壬午二月 千萬歲 東宮媽媽 嘉禮時 器皿 發記	
		【발기1738】 壬午 嘉禮時 砂器 發記	동일본
		【발기1739】 壬午二月 嘉禮時 砂器 發記	
	이불	【발기1083】 임오 천만세 동궁마마 가례시 기소전의 불긔	동일본
		【발기1165】 壬午 千萬歲 東宮媽媽 嘉禮時 衾襦衣 件記	
	보자기	【발기1210】 임오 가례시 각식닌문보 불긔	

【발기1012】는 왕세자의 범복과 의대에 관한 내역으로, 면복(冕服)·강사포(絳紗袍)·용포(龍袍)·도포(道袍)·창의(裳衣)·쾌자(快子) 등의 옷감과 수량을 자세히 열거하였다. 【발기987】과 【발기988】은 왕세자빈의 범복과 의대에 관한 내역으로, 홍장삼·적의·원삼·소고의·치마 등의 옷감과 수량을 열거하였다. 두 자료는 동일한 내용의 한글본으로 【발기987】의 수정 표시들이 【발기988】에 반영된 점이 흥미롭다. 【발기965】·【발기985】·【발기1010】·【발기1013】은 왕세자빈의 속옷에 관한 내역으로, 바지[붕디:奉只]·속옷[니의:裏衣]·대자[디즈:帶子] 등의 옷감과 수량을 열거하였다. 자료명의 ‘침방’을 통해 침방의 속옷 제작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발기들로 보인다. 【발기965】에는 별궁의 왕세자빈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삼간택 때 하사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즉, 자료명의 ‘침방의 문져 흐라 주오신’은 1월 26일 삼간택 이전에 미리 침방에서 제작하도록 작성한 것임을 뜻할 수도 있다.³³⁾ 한글본 【발기985】와 한자본 【발기1010】·【발기1013】은 동일한 내용으로 표기만 다르다. 【발기1186】은 왕세자빈의 의대 가운데

33) 발기의 작성 시기에 관해서는 3장의 2절 ‘자료적 특성’에서 별도로 서술하였다.

수를 놓아 제작해야 하는 것에 관한 내역이다. 전자수복자직금(篆字壽福字織金) · 전자수천만세(篆字壽千萬歲) · 구봉(九鳳) · 용(龍) 등을 수놓은 원삼(圓衫), 당고의(唐古衣), 슬란(膝欄), 대란(大欄)의 종류와 수량을 열거하였다.

【발기1226】·【발기1227】·【발기1242】는 왕세자와 왕세자빈을 위한 흉배(胸背) · 향낭(香囊) · 노리개[佩物] · 베개[枕] 등의 종류와 수량에 관한 내역이다. 한글본 【발기1242】와 한자본 【발기1226】·【발기1227】은 동일한 내용으로 표기와 표현이 약간 다른 점이 흥미롭다. 이러한 차이는 발기의 작성자와 용도에서 기인하는 듯하다.³⁴⁾ 【발기1239】와 【발기1229】는 왕세자빈에게 하사하는 다양한 종류의 비녀[簪], 노리개[佩物], 반지[指環] 등에 관한 내역이다.

【발기1720】과 【발기1721】은 왕세자 가례를 위하여 마련한 기명의 내역에 관한 것이다. 침실(寢室), 고간(庫間), 아릿고(阿里庫), 침방(針房), 수방(繡房), 내소주방(內燒廚房), 외소주방(外燒廚房), 생물방(生物房), 세수간(洗手間), 세답방(洗踏房) 등으로 구분하고, 그 아래에 옷장[衣櫥] · 함농(函籠) · 화로(火爐) · 화삽(火鍬) · 촛대(燭臺) 등의 종류와 수량을 자세하게 열거하였다. 두 자료는 동일한 내용의 한자본으로 종이나 서체는 비슷하나 몇몇 물명의 표기가 다른 점이 흥미롭다. 【발기1738】과 【발기1739】는 사기(砂器)에 관한 내역만 별도로 기록한 것으로, 반상(盤床) · 사발(砂鉢) · 탕기(湯器) · 대접(大楪) · 조치기(助齒器) · 보시기[甫兒] 등의 종류와 수량이 보인다. 두 자료는 내용을 비롯하여 표기, 서체, 지질 등 모두 동일하다.

【발기1083】과 【발기1165】는 왕세자 가례를 위하여 마련한 이불의 내역으로, 이불[衾]과 천의(襦衣)의 종류 및 수량을 열거하였다. 이불은 영(領) · 동정(同丁) · 내공(內貢) · 홀이불[單衾]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여 해당 원단의 명칭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별궁에 진배할 이불과 천의의 내역 또한 별도로 구분하여 뒤에 명시하였다. 한글본 【발기1083】은 후반부가 결락되어 다소 짧으나, 한자본 【발기1165】와 내용이 동일하다. 【발기1210】은 왕세자 가례를 위하여 마련한 인문보에 관한 내역으로, 종류 및 수량뿐만 아니라 가격도 함께 명시하였다. 인문보는

34) 개별 발기의 원문 비교 분석을 통하여 3장의 1절에서 제작 배경을 추론할 수 있었다.

서양목(西洋木)·세목(細木)·저포(苧布) 등으로 만들고 크기에 따라 수량과 가격이 다르다.

왕세자 가례에 소용되는 각종 물품들에 대한 논의는 재간택이 있던 1월 18일에 이루어졌다. 물품의 종류 및 수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보고하게 하고, 전례를 일일이 상고하게 하였다. 이 때 올린 별단도 의궤에 수록되어 있는데, 세자궁 법복·의대, 빈궁 법복·의대, 세자궁 진배, 별궁 진배, 세자궁 기명, 별궁 기명, 수라간 소용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물품들을 열거하였으나 비교적 간략하다.³⁵⁾ 그리고 실제로 소용된 물품의 내역도 의궤에 수록되어 있다. 가례도감 일방(一房)의 상의원에서는 복식과 금침, 삼방(三房)에서는 각종 기명들의 내역을 찾을 수 있다.³⁶⁾ 이 또한 물종과 수량만 간략하게 제시한 정도로 발기의 상세한 기록에는 비할 수 없다.

가례에 소용되는 복식과 기명들은 간택된 왕세자빈이 별궁에 들어가는 시점에 모두 배설되었다. 11월 중순에 가례가 결정된 뒤 이듬해 1월 26일에 왕세자빈이 간택되고 별궁으로 들어갔으니 시간이 결코 넉넉하지 않았다. 게다가 20건의 발기에 보이는 왕세자와 왕세자빈을 위한 복식·패물·금침·기명 등은 품질이나 수량이 만만치 않은 수준이므로 수많은 내인들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2.3 육례를 위한 발기

왕세자 가례는 육례(六禮) 즉 납채(納采), 납징(納徵), 고기(告期), 책빈(冊嬪), 친영(親迎), 동리연(同牢宴)을 차례로 거행한 뒤 조현례(朝見禮), 묘현례(廟見禮)로 마무리한다. 이 모든 과정의 의례를 위하여 제작한 발기는 9건이 전한다. 발기의 제작 시점은 가례의 일정과 무관하지 않다.

가례는 2월 3일 손시에 혼약의 의미로 왕명을 받든 정·부사(正副使)가 왕세

35)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傳敎, 壬午 1월 18일. “嘉禮都監郎廳, 以都提調意, 啓曰, 今此嘉禮敎是時, 各樣物種, 一依定例所載, 別單書入, 而辛巳己卯前例, 一一懸錄, 以備審裁, 至於尙方物種, 自尙方稟單舉行之意, 分付何如. 傳曰允.”

36)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一房儀軌, 尙衣院 ; 三房儀軌.

자빈의 본가에 기러기를 전달하는 ‘납채의’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혼례의 예물로 속백(束帛)과 양마(兩馬)를 전달하는 ‘납정의’를 2월 7일 오시에, 혼례 날짜를 알리는 ‘고기’를 2월 9일 손시에 거행하였다. 2월 19일 오시에는 세자빈으로 책봉하며 교명(敎命)·죽책(竹冊)·옥인(玉印)·명의대(命衣襪)를 하사하는 ‘책빈례’를 거행하였고, 21일에는 왕세자가 왕세자빈을 궐내로 모시고 와서 술잔을 나누는 ‘친영례’와 ‘동퇴연’을 이어서 행하였다. 이튿날 22일에는 비로소 왕세자빈의 책봉을 알리는 교서를 반포하고, 왕세자빈은 대전과 중궁전, 대왕대비전, 왕대비전을 뵈는 조현례를 거행하였다.³⁷⁾ 그리고 3월 6일 왕세자빈이 종묘 등에 배알하는 묘현례를 거행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끝났다. 이 가운데 발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례는 책빈례, 친영례, 동퇴연, 조현례, 묘현례다.

<표 5> 육례 관련 발기 목록

절차	내역	자 료 명	비고
공동	내인 명단	【발기1696】 壬午 嘉禮時 差備內人 件記	
책빈례	내인 명단	【발기1704】 임오이월 슈척시 각즈비관 불기	동일본
		【발기1705】 임오이월 슈척시 각즈비관 불기	
친영례 동퇴연	내인 명단	【발기1684】 임오이월 가례시 각즈비관 불기	동일본
		【발기1685】 임오이월 가례시 각즈비관 불기	
조현례	내인 명단	【발기1690】 임오이월 가례시 조현 즈비관 불기	동일본
		【발기1701】 임오이월 가례시 조현 즈비관 불기	
묘현례	수복 명단	【발기1571】 임오이월 가례 후 처음 종묘 경모궁 묘현배호오신 후 마마 빈마누라 고평 상경주오신 불기	동일본
		【발기1546】 壬午二月 嘉禮後 初次 宗廟 景慕宮 廟見禮敎是後 媽媽 嬪媽媽 古風 賞格 件記	

37) 왕세자 가례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의례의 절차를 상세하게 기록한 ‘의주(儀註)’를 제작하였는데, 당시 여러 비빈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글본 의주도 별도로 만들었다고 한다. 대왕대비전·왕대비전·중궁전에게는 조현례 의주를, 왕세자빈에게는 수책례 등의 의주를 써서 들였다고 한다(『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傳敎, 壬午 2월 초9일. “嘉禮都監郎廳以都提調意啓曰, 今此王世子嘉禮時, 各樣儀註九度, 謹此書入, 而世子宮亦爲書入, 朝見禮儀註眞諺書各一度, 書入于大王大妃殿·王大妃殿·中宮殿, 嬪受冊等儀註眞諺書各七度, 書入于別宮之意, 敢啓. 傳曰, 知道.”).

【발기1696】은 가례에 참여하는 내인들의 명단이다. 수책, 친영, 동퇴연, 조현으로 구분하고 각 절차에 따르는 직무와 해당 내인의 이름을 명시하였다. 수책례(受冊禮)는 왕이 사자(使者)에게 왕세자빈을 책봉하는 교명(敎命)을 전하는 책빈례를 거행한 뒤에 왕세자빈이 사자로부터 책봉 교명을 받는 의례이다. 따라서 왕세자빈을 보좌하기 위하여 명의대(命衣衛)·개장(蓋仗)·죽책(竹冊)·교명(敎命)·독책(讀冊)·동서창(東西唱)·향(香)·산선(緞扇)을 맡은 차비 내인(差備內人)들이 필요하다. 또 친영과 동퇴연을 거행할 때에는 왕세자와 왕세자빈의 행차를 모시는 차비 내인, 조현례에는 대전·중전·대왕대비전을 모시는 차비 내인들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주요 차비 내인의 명단을 기록해 둔 것이다. 내인들의 이름은 성(姓)이 없고, 학운(鶴雲), 혜순(惠順), 운희(雲喜), 벽영(碧英), 명현(名賢) 등과 같이 쉬운 한자로 되어 있다.

【발기1704】와 【발기1705】는 수책례에 참여하는 내인들의 명단으로, 동일한 내용의 한글본이다. 【발기1696】에 비해 전인(前引), 배위(陪衛), 수식차비(首飾差備), 옥인차비(玉印差備), 안차비(案差備), 옥석차비(褥席差備), 집사(執事)·홀기(笏記), 양산차비(陽緞差備), 의장차비(儀仗差備) 등이 포함되어 보다 상세하다. 【발기1684】와 【발기1685】는 친영 및 동퇴연에 참여하는 내인들의 명단이다. 세자궁배위(世子宮陪衛)와 빈궁배위(嬪宮陪衛)로 구분하고 해당 직무와 내인의 이름을 열거하였는데, 【발기1685】에는 조현례에 참여하는 내인들의 명단도 포함되어 있다. 【발기1690】과 【발기1701】은 조현례에 참여하는 내인들의 명단이다. 대전시위(大殿侍衛)와 중전시위[殿嫗侍衛]로 구분하고 세부 직무와 내인의 이름을 열거하였다. 다만 【발기1690】은 후반부에 빈궁배위(嬪宮陪衛)와 대왕대비전시위(大王大妃殿侍衛)도 포함되어 있다. 【발기1684】와 【발기1685】, 【발기1690】과 【발기1701】은 각각 서식과 내용을 비롯하여 서체, 표기, 지질 등이 거의 동일한 자료이나, 원문을 서로 비교해보면 일부 내인의 이름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변동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본들로 보인다. 모두 【발기1696】의 내용에 비하면 매우 자세하다.

【발기1546】과 【발기1571】은 왕세자빈이 종묘와 경모궁에 나아가 선대 왕과

왕비들에게 배알하는 묘현례를 거행하고 난 뒤 이에 관여한 수복들에게 상으로 옷감을 하사한 내역이다. 종묘의 전도수복(前導守僕) 2인과 수복 33인, 경모궁의 전도수복 2인과 수복 9인, 경모궁 전알을 도운 태묘 수복 6인에 대하여 왕세자와 왕세자빈이 각각 옷감을 하사하였다. 당시 가례 후 처음으로 전알한 것을 기념하여 도제조 이하에게 차등 시상한 바 있다.³⁸⁾

육례를 위하여 제작한 발기는 대부분 해당 의례에 참여하는 내인들의 명단이다. 따라서 의례를 거행하기 전에 제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왕실 의례는 세 차례의 예행연습(習儀)을 행하는데,³⁹⁾ 그 과정에서 내인들의 세부 직무를 정하고 발기로 작성하는 듯하다.

2.2.4 시상을 위한 발기

가례의 절차를 모두 거행한 뒤에는 가례도감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한 대대적인 차등 시상이 이루어진다. 주요 시상 대상의 명단과 상전의 내역은 의례에 수록되어 있다.⁴⁰⁾ 이와 관련된 발기도 19건이 전한다.

<표 6> 시상 관련 발기 목록

내역	자 료 명	비고
관원 명단	【발기1569】 임오이월 가례후 도감 상격호오신 불기	동일본
	【발기1538】 壬午二月 嘉禮後 都監 賞格 件記	
	【발기1547】 壬午二月 千萬歲 東宮媽媽 嘉禮後 外賞格 件記	
내관/관원 명단	【발기1785】 壬午 嘉禮時 動員 發記	

38) 『高宗實錄』 19년 3월 6일. “詣宗廟・景慕宮展謁. 中宮殿同詣, 王世子・世子嬪宮隨詣, 行禮. ○ 廟宮都提調以下, 施賞有差, 以東宮嘉禮後初謁廟宮, 有是命.”

39)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舉行日記. “初十日, 冊嬪醮戒親迎初二度習儀[自議政府至工曹行禮]. 十二日, 嬪受冊親迎初二度習儀[行於別宮]. 十四日, 嬪受冊親迎內習儀[行於別宮]. 十五日, 冊嬪醮戒親迎三度習儀[上同]. 十六日, 同牢宴朝見禮初二度內習儀[行於重熙堂]. 十八日, 同牢宴朝見禮三度內習儀[行於別宮].”

40)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賞典.

왕실 의례를 위한 발기[件記]의 제작과 특성

내역	자 료 명	비고
내관 명단	【발기1590】 임오이월 가례시 외상격호오신 불긔	동일본
	【발기1539】 壬午二月 嘉禮時 賞格 件記	
	【발기1549】 壬午二月 嘉禮後 公事廳 大殿所屬 賞格 件記	
내관/하급관원 명단	【발기1541】 壬午二月 千萬歲 東宮媽媽 嘉禮後 賞格 件記	
하급관원 명단	【발기1523】 壬午二月 千萬歲 東宮媽媽 嘉禮後 外賞格 件記	동일본
	【발기1531】 壬午二月 嘉禮後 本房 御床 進排 所屬 賞格 件記	
	【발기1532】 壬午二月 嘉禮後 本房 御床 進排 所屬 賞格 件記	
내인 명단	【발기1619】 임오이월 천만세 동궁마마 가례 즈비관녀인 낭던마마겨오 사 주오신 상격 불긔	동일본
	【발기1542】 壬午二月 千萬歲 東宮媽媽 嘉禮 差備官內人 兩殿媽媽 賞格 件記	
	【발기1543】 壬午二月 千萬歲 東宮媽媽 嘉禮 差備官內人 兩殿媽媽 賞格 件記	
	【발기1533】 壬午二月 嘉禮時 大殿內人 賞格 件記	
	【발기1534】 壬午 千萬歲 東宮媽媽 嘉禮敎是後 賞格 件記	동일본
	【발기1610】 임오이월 가례시 내인 상격호오신 불긔	
	【발기1544】 壬午二月 嘉禮時 內人 賞格 件記	
	【발기1540】 壬午二月 千萬歲 東宮媽媽 嘉禮後 世子宮內人 賞格 件記	

【발기1569】와 【발기1538】은 가례도감의 관원에 대한 시상 내역이다. 정사(正使), 부사(府使), 도제조(都提調), 제조(提調), 낭청(郎廳) 등의 직책과 이름을 쓰고 각각의 상전(賞典)을 명시하였다. 상전은 흉배(胸背)를 비롯하여 운문사(雲紋紗), 설한초(雪汗綃), 수침(繡枕), 저포(苧布), 숙갑사(熟甲紗) 등으로 다양하다. 의례에서 상전으로 말[馬], 가자(加資), 승서(陞敍) 등을 기록한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두 자료는 한글과 한자로 표기만 다를 뿐 내용은 동일하다. 다만 한글본 【발기1569】의 기록이 가례도감과 시강원의 사부(師傅)에 그친 반면, 한자본 【발기1538】은 시강원[春坊]과 익위사[桂坊] 관원들까지 모두 기재된 점이 다르다. 서식이나 종이 형태로 볼 때 뒷부분이 결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발기1547】은 왕세자빈이 입궐할 때 시위한 관원들에 대한 시상 내역이다. 시강원, 내의원, 병조

등에서 배정된 관원들로 이름 혹은 인원수와 상전 수량을 열거하였다. 상전은 은조사(銀條紗), 십량주(十兩紬), 서양사(西洋紗), 백목(白木), 색주(色紬) 등의 옷감이다.

【발기1785】는 가례에 동원된 관원과 내관들의 명단이다. 내시부, 가례도감, 시강원, 익위사, 승정원, 상의원, 사옹원, 내자시 등으로 구분하고 세부 직책과 이름을 열거하였다. 내시부에서는 가례차지(嘉禮次知), 동뢰연차지(同牢宴次知), 배설차지(排設次知), 교명차비(敎命差備), 죽책차비(竹冊差備), 옥인차비(玉印差備), 명의대차비(命衣櫛差備) 등이 보이는데, 앞서 육례에서의 내인들의 역할과 비슷하다. 내관과 내인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례에 기록이 없으므로, 발기를 통해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발기1590】과 【발기1539】는 가례에 참여한 내관들에 대한 시상 내역이다. 두 자료는 한글과 한자로 표기만 다를 뿐 내용이 동일하며, 그 명단은 【발기1785】와 거의 일치한다. 상전은 설한초, 색주, 저포, 백목 등의 옷감이다. 【발기1549】는 공사청과 대전 소속 내관들에 대한 시상 내역이다. 직책과 인원수만 명시하고, 각 상전으로 저포·명주·무명 등의 옷감과 수량을 열거하였다.

내관뿐만 아니라 군관(軍官) 등의 하급 관원, 목수 등의 장인들에 대한 시상 내역에 관한 발기도 있다. 【발기1541】·【발기1523】·【발기1531】·【발기1532】가 이에 해당한다. 대상자가 많은 만큼 이름 대신 인원수만 명시하였고, 상전 역시 무명이 주를 이룬다.

가례에 참여한 내인들에 대한 시상 내역을 기록한 발기도 8건이 전한다. 【발기1619】·【발기1542】·【발기1543】은 의례에 직접 참여한 내인들에 관한 것이다. 전인(前引), 전도(前導), 집사(執事) 등의 직무와 해당 내인의 이름을 명시하였다. 한자본 【발기1542】·【발기1543】에는 한글본 【발기1619】와 달리 경우궁 등 각 궁에서 동원된 내인들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다. 상전은 장원주(壯元紬), 수화주(水禾紬), 백목(白木), 포(布) 등의 옷감이다. 【발기1533】과 【발기1534】은 대전 소속 내인들에 관한 것이다. 두 자료에 열거된 명단은 거의 비슷하나 시상한 옷감의 종류가 다르다. 상전의 옷감을 수정하였거나 두 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옷감을 내렸

을 가능성이 있다. 【발기1610】·【발기1544】·【발기1540】은 세자궁 내인들에 대한 것이다. 침방, 수방, 외소주방, 내소주방, 생물방, 세수간, 세답방 등으로 구분하고, 해당 내인들의 이름과 상전 내역을 열거하였다. 한글본 【발기1610】과 한자본 【발기1544】는 동일본이나, 한자본 【발기1540】은 그 시상 옷감이 조금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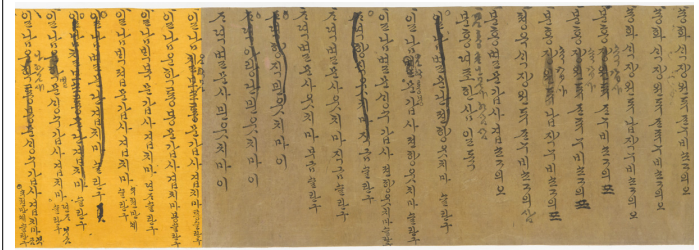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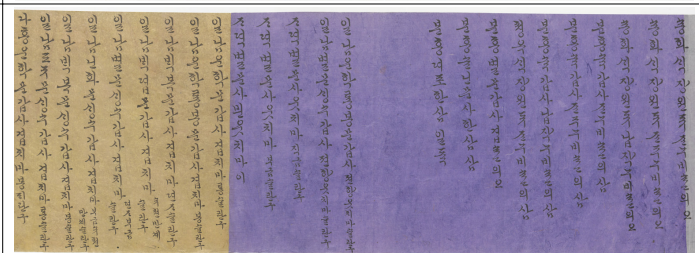
시상을 위해 작성한 발기들은 주로 내관과 내인들에 대한 것이 많으며, 그 상전 또한 옷감 위주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부 가례도감을 비롯한 관원들에 대한 시상 내역도 있으나, 그들에 대한 상전이 의복 기록과는 달리 옷감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적 특징은 발기의 자료적 특성과 연관 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발기의 제작 배경과 특성

3.1 제작 배경

왕세자 가례를 위하여 제작한 발기 58건 가운데 36건이 동일본과 함께 전한다. 동일본은 완전히 같은 내용을 한글과 한자로 표기만 다르게 썼거나,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서체와 표기 등 같은 부분이 많은 자료를 일컫는다. 즉, 일반적으로 ‘이본’이라 일컫는 것도 모두 포괄한다. 동일본이 존재하는 발기들의 원문을 비교 분석해보면 그 제작 배경에 대한 실마리를 몇 가지 찾을 수 있다.

먼저 단서 중 하나로 교정 흔적들부터 살펴보자. 【발기987】은 다른 발기들과 달리 글자 위에 줄을 긋거나 까맣게 칠하여 기존의 원문을 삭제하고 그 옆에 다른 내용을 추가한 부분이 많다. 다양한 색상으로 물들인 종이 여러 장을 450cm 남짓 할 정도로 이어 붙이고 방대한 양의 기록을 정갈한 글씨로 쓴 것으로 볼 때 초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큰 변동 사항들이 다수 발생하여 대대적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수정 과정을 거쳐 작성한 것이 【발기988】이다.

【발기987】	
【발기988】	

<도 2> 발기의 초본과 수정본

예를 들면, 기존의 ‘분홍 장원뿔 존누비 쇼고의 오’에서 옷감 ‘장원뿔’ 부분을 까맣게 칠한 뒤 그 옆에 ‘속갑사’를 쓰고 수량 ‘오’ 위에는 ‘삼’을 써서 수정한 것은, 【발기988】에 ‘분홍 속갑사 존누비 쇼고의 삼’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기존의 ‘분홍 별문갑사 겹쇼고의 오’와 ‘분홍 더포 한삼 일뿔’ 사이에 ‘분홍 순닌문사 한삼 삼’을 추가한 것은 【발기988】에 자연스럽게 열거되어 있다. 기존의 원문에 줄을 그어 내용을 완전히 삭제한 것 또한 【발기988】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즉, 【발기988】은 【발기987】의 작성과 교정을 거쳐 완성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사례로 【발기989】에서 줄을 그어 삭제한 ‘산호지환 일뿔’이 【발기961】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

가례에 참여하는 내인들의 명단을 기록한 발기의 동일본을 서로 비교해보면 서식, 표기, 지질, 서체 등은 모두 비슷하나 일부 내용이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발기1701】은 글자 위에 점을 찍거나 물로 종이를 얇게 벗겨 글자를 지운 뒤 그 위에 새로 쓴 흔적들이 많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내용의 【발기1690】은 교정 흔적이 적고 글씨가 정갈할 뿐 아니라 글자의 간격도 비교적 일정하다. 형태로 보면 【발기1690】이 완성본이 가깝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가례에 참여한 내인들의

명단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한 최종본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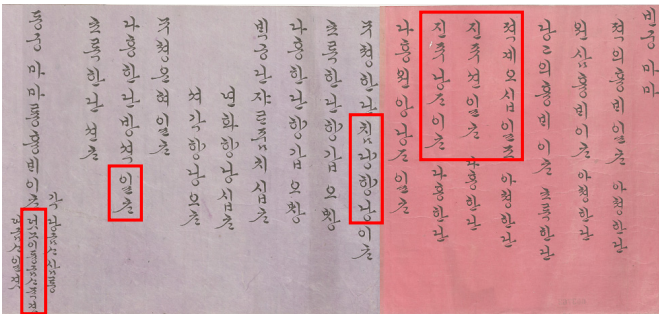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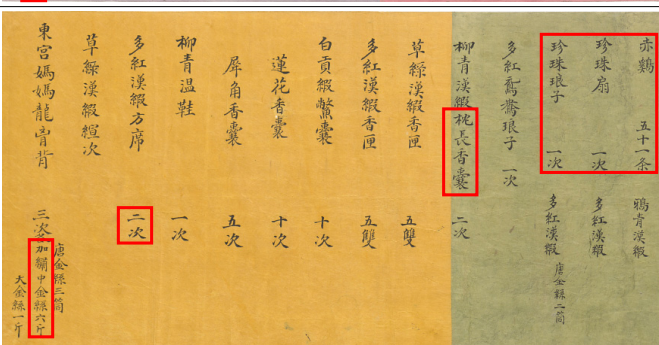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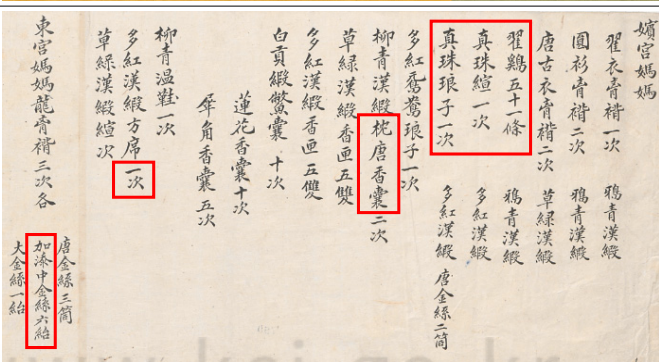
【발기1690】	금월을부스비음회 제수증비음회 조연음증비음회 작곡음증비음회 추곡정음증비음회 진음증비음회 남마구다시외 전음증비음회 향음증비음회 보지음증비음회 시외 방산음증비음회 상선음증비음회 종선음증비음회 음정음증비음회
【발기1701】	금월을부스비음회 제수증비음회 조연음증비음회 작곡음증비음회 추곡정음증비음회 진음증비음회 남마구다시외 전음증비음회 향음증비음회 보지음증비음회 시외 방산음증비음회 상선음증비음회 종선음증비음회 음정음증비음회

<도 3> 발기의 교정 흔적

발기에는 교정 표시뿐만 아니라 점을 찍거나 원을 그려 확인 표시를 한 듯한 흔적들이 많다. 이는 발기가 단순히 기록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 사항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실제로 이용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발기의 주요 기록은 음식, 복식, 기물, 명단에 관한 것이므로 실제의 현황과 일치하는 사실성을 전제로 한다. 한 줄에 하나씩 물품의 명칭과 수량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길게 열거하는 형태로 쓴 것도 하나하나 비교하며 점검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단서는 같은 내용을 표기만 달리 하여 쓴 동일본 발기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가례를 위하여 제작한 발기 중에는 한글본과 이에 대응하는 한자본이 각각 1건씩 있을 뿐만 아니라, 한자본도 서로 다른 한자로 표기한 또 다른 한자본이 있다. 한글본 【발기1242】와 2종의 한자본 【발기1226】·【발기1227】의 원문을 비교해보면 한글에 대응하는 같은 뜻의 단어를 다른 한자로 표기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꿩을 가리키는 ‘적계’를 ‘赤鷄’와 ‘翟鷄’로, ‘진주’를 ‘珍珠’와 ‘眞珠’로, 수를 덧놓는 것을 가리키는 ‘덧노이’를 ‘加繡’와 ‘加添’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관습적으로 혼용하

여 쓰는 표현들이므로 오류라고 지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진주로 장식한 부채를 가리키는 ‘진주선’을 ‘珍珠扇’과 ‘眞珠線’으로, 베개에 넣는 긴 향주머니를 가리키는 ‘침당향낭’을 ‘枕長香囊’과 ‘枕唐香囊’으로 표기한 것은 후자가 모두 명백한 오기(誤記)다. 따라서 【발기1227】의 한자 표기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이 생긴다.

【발기1242】	
【발기1226】	
【발기1227】	

그러나 한글본 【발기1242】와의 관계는 【발기1227】이 더 가까워 보인다. 비록 오기에 해당하나 ‘枕唐香囊’과 ‘眞珠綰’은 한글본의 ‘침당향낭’과 ‘진주선’을 잘못 이해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다홍한단(多紅漢緞)으로 만든 방석의 수량이 한글본과 【발기1227】에서는 ‘일츠’와 ‘一次’로 기록한 반면, 【발기1226】에서는 ‘二次’로 표기한 데서도 드러난다. 그렇다면 한글본을 저본으로 한자본 【발기1227】을 작성하였고, 그 뒤에 한글본과 【발기1227】의 오류를 수정하여 한자본 【발기1226】을 제작하였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종이의 색상이나 지질, 표기, 서체 등 여러 다른 면을 살펴보아도 한자본 【발기1226】이 최종본에 가깝다.

표기로 구분할 때 한글본 발기는 58건 가운데 23건이다. 한글본 발기의 기록 양상을 보면 한자어로 된 물품의 명칭은 동일한 음가의 한글로 표기하지만, 우리 말 단어나 내인의 이름은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여 구어에 가깝게 쓰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한글의 구어적 표현들을 한자로 그대로 옮겨 쓴 한자본이 있는 반면, 한자어를 기반으로 쓴 또 다른 한자본이 있는 것이다.

내인의 명단을 열거한 【발기1545】를 보면 발음하기 편한 한자로 이름을 표기한 것을 볼 수 있다. ‘丁雲伊(정운이)’, ‘浩英伊(호영이)’, ‘慶福伊(경복이)’ 등과 같이 이름이 발음상 종성으로 끝나는 경우 ‘-伊(이)’를 붙였다. 이는 한글본 발기에서 ‘희일이’, ‘영순이’, ‘옥완이’ 등은 이름 끝에 ‘-이’가 붙이고, ‘원희’, ‘평혜’ 등은 붙이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동일본 【발기1528】에서는 ‘丁雲(정운)’, ‘鎬榮(호영)’, ‘景福(경복)’과 같이 ‘-이’도 붙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음가가 동일한 다른 한자로 표기하였다. 기명의 내역을 열거한 【발기1720】과 【발기1721】에서는 구어적 표현의 다른 한자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진하기를 표시하는 농담을 ‘濃淡’과 ‘龍膽’, 국자와 비슷한 구기는 ‘旬只’와 ‘掬耳’, 나무공이는 ‘木公伊’와 ‘木杵’, 주걱은 ‘{周/ㄱ}億’과 ‘周杼’으로 표기하였다. ‘濃淡’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소리가 같은 한자를 빌려 쓴 차자 표기다. 동일한 물품을 서로 다른 한자로 표기한 점이 흥미롭다.

<표 7> 다른 한자 표기의 예

	【발기1720】	【발기1721】		【발기1720】	【발기1721】
농담칠	濃淡漆	龍膽漆	조빙궤	調氷櫬	塗氷櫬
느티나무	龜木	槐木	나무공이	木公伊	木杵
대접	大牒	大接	물통	水桶	水筩
구기	句只	掬耳	소라	所羅	召羅
수틀	繡郭	繡權	주걱	{周/ㄱ}億	周𣵵
전반	剪板	剪盤	석쇠	錫金	鏹釧
주물화로	鑄火爐	炷火爐	울조리	要助里	了{助/乙}伊

이러한 표기의 차이는 서로 다른 사람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다른 목적으로 각각의 발기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우선 한글본 발기는 한글을 궁체로 정갈하게 쓴 서체만으로도 내인(內人)들이 작성한 것임을 증명하며⁴¹⁾ 발기만 주로 맡아서 쓰는 내인이 있었다는 증언⁴²⁾은 이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가례를 거행할 때 차비관으로 동원하는 의녀(醫女)들⁴³⁾이 발기를 작성할 수 있도록 종이를 내어준 전례⁴⁴⁾도 있다. 발기의 내용 또한 내인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음식, 복식, 기물 등에 관한 것이다.

내인들이 작성한 한글본 발기를 바탕으로 한자본 발기를 작성한 것은 내관(內官)들이다. 내관이 발기 작성에 관여한 기록이 있을 뿐만 아니라⁴⁵⁾ 내수사 장부에

41) 최영희(2015), 324-362.

42) 金用淑(1987), 373-374.

43)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一房儀軌, 各差備醫女秩.

44) 『嘉禮都監儀軌』(1671), 一房儀軌, 稟目秩, 辛亥 2월 28일. “冊嬪親迎同牢私習儀及正日行禮舉行時, 議註及笄記曆書, 禮貌官各執爲舛, 執事醫女與內人, 諺書禮文書給次厚紙四張, 各差備醫女件記書給次楮注紙二張, 并以上下何如, 堂上手決依.”

위와 동일한 원문을 『嘉禮都監儀軌』(1696), 『嘉禮都監儀軌』(1718), 『嘉禮都監儀軌』(1727), 『嘉禮都監儀軌』(1744)에서도 찾을 수 있다.

45) 『明聖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1684), 殯殿都監儀軌, 啓辭秩, 癸亥 12월 초5일. “總護使以承傳色口傳啓曰, 卽者, 次知內官, 以襲斂所用衣櫬件記送示, 而紙末有慈聖遺教數條, 此必謄傳之本, 而不敢留置, 謹此封還. 且遺教中有祭奠及殯殿諸具, 皆從減損之教, 若一遵遺教, 則祭需之減損, 當自襲斂爲始, 而莫重應行之文, 亦不可不備, 何以爲之.”

서도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내수사장토문적(內需司庄土文績)』에는 왕실에 물품을 조달하기 위하여 물품의 명칭과 수량, 가격 등을 열거한 각종 발기 자료들이 합철되어 있다. 시장에서 물품을 거래하는 것을 ‘무역(貿易)’이라 하는데 그 내역을 기록한 ‘무역 발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왕실 내부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내인들이 문서로 작성하면 이에 의거하여 내관들이 시장에서 거래하여 왕실로 조달한다고 한다.⁴⁶⁾ 거래를 위하여 제작한 발기들은 내수사 장부에 수록된 발기와 성격이 다르지만, 왕실 물품의 관리와 운용에 있어서 내인과 내관의 소통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한글본과 별도의 한자본이 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때의 한자본은 한글본을 바탕으로 작성하므로 구어성이 짙을 가능성이 높다.

내관의 개입 가능성은 관원들의 이름에 대한 한자 표기에서도 알 수 있다. 물품명의 경우에는 혼용하여 쓰는 한자어나 동일한 음가의 차자표기가 존재하므로 작성자의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인명은 다르다. 특히 가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가례도감의 관원 이름은 잘못 쓸 수가 없다. 【발기1538】에는 가례도감을 비롯한 관원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한자 표기가 의례의 기록과 차이가 있다. 즉, 예조좌랑 ‘韓龍珪(한용규)’는 ‘韓容圭’로, 공조정랑 ‘洪善周(홍선주)’는 ‘洪善柱’, 종친부전부 ‘金炳薰(김병훈)’은 ‘金炳勳’, 군자감판관 ‘申台善(신태선)’은 ‘申泰善’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가례도감의 낭청으로서 5~6품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인명 표기의 오류는 다른 발기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또 다른 한자본 발기는 내관들보다 한문 소양이 있는 하급 관리가 작성하였을 것이다. 가례를 위한 제반 업무는 모두 가례도감의 소관이므로, 발기에 기록된 물품들이나 참여 인원들 역시 가례도감의 관할 하에 있었다. 가례도감의 주요 직책은 도제조(都提調)·제조(提調)·낭청(郎廳)으로, 낭청이 실무를 분담한 1방·2방·3방의 책임을 맡는다.⁴⁷⁾ 그리고 그 아래에서 문서 수발 등의 잡무를 담당하

46) 조영준, “조선후기 왕실의 조달절차와 소통체계,” 『古文書研究』 제37집(2010), 91-121.

47)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座目.

는 서리(書吏)가 있는데, 바로 이들이 물품의 조달과 함께 발기 작성에 관여하는 것이다. 각종 의례에서 소용 물품을 마련할 때 이를 확인할 문서로 발기의 작성을 공식적으로 명했던 전례⁴⁸⁾는 물품 관리와 함께 발기의 작성 및 검토가 해당 도감의 주요 업무였음을 의미한다.

결국 발기의 제작은 해당 물품과 관련 인물들의 운용 체계와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식이나 옷감 등 내인들이 관련된 물품에 대하여 이를 직접 제작하고 관리해야 하는 내인들이 한글로 발기를 작성하고, 한글본 발기에 의거하여 해당 물품을 공급해야 하는 내관들이 구어성이 짙은 한자로 바꿔 쓴다. 이 한자본 발기는 물품 공급을 위한 근거 자료가 된다. 그리고 물품 관리의 전반을 관장하는 서리들은 내관이 작성한 한자본 발기를 검토한 뒤 오류를 바로잡거나 변동 사항들을 반영하여 또 다른 한자본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의례의 종합보고서로 제작하는 의례의 기초자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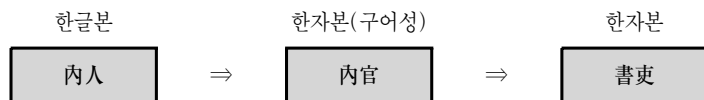
48) 『寧陵遷陵都監儀軌』(1673), 一房儀軌, 稟目秩, 癸丑 8월 13일. “大小褰腰彩褰所入流蘇及腰索紅眞絲, 元磨鍊六斤十五兩五錢, 而磨鍊件記中明白載錄是乎矣.”

『國葬都監儀軌』(1681), 一房儀軌, 稟目秩, 庚申 12월 초2일. “取考甲寅春國恤時班次圖及彩輿磨鍊件記, 則二房所掌, 服玩函彩輿一笱櫝彩輿一木奴婢櫝彩輿一沙器櫝彩輿一是如, 載在謄錄是乎等以, 依此磨鍊爲有如其, 昨見二房稟目, 則彩輿書出後錄中冕服函彩輿一措備, 亦捧甘爲有臥乎所, 更考謄錄及班次圖爲良置, 冕服彩輿不載是乎所, 冕服函同載於他彩輿是乎喻, 未知其由是在果, 彩輿一部加造爲乎乙喻, 何以爲之稟. 總護使手決內, 依二房謄錄造作宜當.”

『國葬都監儀軌』(1720), 一房儀軌, 稟目秩, 庚子 7월 초6일. “本房二所掌次知, 各樣物件, 前排修補與新造者, 該掌監造官, 親自看審, 磨鍊件記, 從當修上是乎矣.”

『殯殿都監儀軌』(1720), 啓辭秩, 庚子 6월 11일. “使司謁, 慈教內, 靈寢平牀, 雖有前例, 自內待令, 勿爲措備, 凡于措備之物, 限發鞘內入之物, 別錄書入, 素衿袴, 不拘高樣, 便於侍衛, 爲先二寸減除, 已上書單子, 以件記內入.”

『上號都監儀軌』(1827), 別工作儀軌, 手本, 丁亥 8월 21일. “各樣工匠等所用鍊粧流伊還下件者, 一并還爲打造是乎旃, 其餘段置, 令分差計士, 從實入收用爲只爲. 手決內, 詳考各房文書及本所實入文書, 此外未下各種鐵一一成件記手本, 俾爲收拾還下. 同日. 都廳以下各房與本所所用物種造作進排爲有置, 所入物力從實入爲只爲. 手決內, 各房所用已多, 疑晦別工作所用尤不可知, 而毋論其虛實精濫, 都是還下物種, 則不必苛論, 故以依稟例, 題以此實入後, 無遺還下之意, 一一成件記, 更稟.”



<도 4> 발기의 작성 순서와 작성자

이처럼 발기의 내용이 다른 형태로 여러 번 제작된 대표적인 사례로 『정미가례시일기(丁未嘉禮時日記)』를 꼽을 수 있다. 『정미가례시일기』는 1847년(헌종 13) 헌종과 경빈김씨의 가례에 소용된 물품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자료로서 발기와 동일한 서식으로 물품들의 명칭과 수량을 열거하였다. 동일한 내용으로 1책의 『정미가례시일기』, 6책의 『정미가례시일기』, 1권의 『憲宗妃慶嬪金氏順和宮嘉禮時節次』가 전한다.⁴⁹⁾ 원문을 비교한 결과 1책의 한글본을 바탕으로 한자본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다시 6책의 한글본으로 재편집하였음이 밝혀졌다.⁵⁰⁾ 이는 한글본과 한자본이 서로 참조하면서 각기 다른 형태로 제작될 수 있으며, 낱장의 발기가 최종적으로는 책자 형태로 재편집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3.2 자료적 특성

발기의 제작 배경에는 해당 물품을 마련하거나 인원을 배치하는 일에 대한 운용 체계가 있었다. 가례에는 상당량의 물품과 인원이 동원되었으므로 그 내역을 미리 작성해두지 않으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또 물품과 인원을 배치하는 과정에서는 변동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수정하지 않으면 진행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보고 문서를 작성할 때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발기는 해당 의례를 진행하는 기간 전체에 걸쳐 끊임없이 작성된다고 보는 것이

49) 『정미가례시일기』, 1책, 장서각 K2-2708.

『정미가례시일기』, 6책, 장서각 K2-2709.

『憲宗妃慶嬪金氏順和宮嘉禮時節次』, 1권, 규장각奎 27008.

50) 황문환, 안승준, “『정미가례시일기(丁未嘉禮時日記)』의 書誌의 考察,” 『藏書閣』 제19집 (2008), 5-38.

옳다. 개별 발기에 따라 사전에 작성한 것도 있고, 사후에 작성한 것도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가장 오랜 시간이 필요한 왕세자빈의 복식을 마련하는 일은 미리 발기를 작성하여 점검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발기965】의 자료 명칭에서 ‘빈궁 마누라 의디 침방의 문저허라 주오신 불기’는 왕세자빈의 의대 제작 내역을 침방에 미리 알리기 위하여 작성한 사실을 알려준다. 가례를 준비하는 기간이 결코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품과 관련된 발기는 미리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육례에 참여하는 내인들의 명단 역시 실행 전에 미리 작성하고, 세 차례의 예행연습 즉 습의를 행하는 동안 수정을 거듭하여 최종 명단을 확정하였다. 시상을 위한 발기들도 그 대상과 해당 상전을 정리하기 위하여 시상 전에 미리 작성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절차가 끝나면 소요 물품과 참여 인원들을 정리하기 위하여 최종 본을 만들었을 것이다. 여러 종의 동일본은 그 작성 시점이 각기 다른 데서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개별 발기의 작성 시점보다는 제작 배경과 특성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그 자료적 가치를 밝히는 데 유리하다.

조선 후기의 왕실 의례에 관한 기록은 등록과 의궤로 집대성된다. 거행 일정과 왕명을 기록한 전교(傳敎)를 비롯하여 각종 관청 문서들, 소용 물자의 내역, 참여 인원 등에 대한 시상 내역 등 의례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기록들을 모두 정리한 종합적인 보고서에 해당한다. 1882년의 왕세자 가례 역시 『왕세자가례등록』과 『왕세자가례도감의궤』로 각각 정리하였으나, 발기의 내용은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간택에 관한 사항은 일정과 처자 명단에 그쳤을 뿐 음식이나 복식의 내역, 참여 내인들의 명단 등은 보이지 않는다. 별궁 시절에 마련된 복식·패물·기물에 대한 것은 의궤에 간략하게나마 수록하였으나⁵¹⁾ 발기의 구체적인 기록에는 비할 수 없다. 육례에 참여한 내인들이나 시상 대상에 포함되었던 하급관리·내관·내인들의 명단은 조금도 수록하지 않았다.

51)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一房儀軌, 尙衣院. “世子宮法服(及所掌物種), 冕服一件, 赤襪一件(以上次入), 赤烏一部(造入次), 龍袍一件, 鴉青小雲紋匹緞一匹, ……”

발기가 의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실무용 자료로서 의례가 모두 끝난 뒤에 등록이나 의례의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⁵²⁾ 그러나 등록과 발기의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⁵³⁾가 종종 발생할 정도로 모든 내용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이는 발기가 다른 관찬 사료와는 차별화된 독자성을 지니며 훨씬 구체적인 사실을 담고 있다는 사료로서의 가치를 부각시킨다.

그렇다면 발기는 문헌학적 범주에서 무엇으로 규정하면 좋을까? 지금까지 발기는 문서로 간주되어 왔다.⁵⁴⁾ 그러나 문서의 정의를 보면 “문서는 반드시 특정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 갑이라는 주체의 의지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을이라는 특정의 대상에 전달이 됨으로써 문서의 구실을 하게 된다.”⁵⁵⁾라고 하였다. 문서는 반드시 발·수신자와 발급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발기들은 자료 명칭과 기록 내용 외에 발·수신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도 정확하지 않으므로 문서로 규정하기 어렵다.

고문헌학에서는 그 분류 체계를 크게 고문서, 고서, 금석문, 고기록으로 구분하는데,⁵⁶⁾ 발기의 성격과 부합하는 것은 ‘고기록’이다. 사실 ‘고기록’은 다른 분류 체계에 속할 수 없는 모든 기록물을 포괄한다. 따라서 장정 형태나 성격도 모두

52) 『明聖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1684), 殯殿都監儀軌, 殯殿一房所掌, 稟目秩, 甲子 2월 15일. “山陵都監移文內, 靈座靈寢移設諸具開錄回移事, 據分付尙方既已開錄進呈爲有在果, 當初靈座靈寢, 自三房造作, 各樣諸具, 想必昭載於三房謄錄, 尙方所呈開錄件記及山陵都監移文, 移送三房, 與該房謄錄相准後, 使之回移事. 手決內, 依因三房稟目, 成服後則殯殿諸事, 一房專掌次知, 故自一房舉行.”

『殯殿都監儀軌』(1701), 一房儀軌, 守僕手本秩, 辛巳 11월 21일. “本殿祭器, 既已入庫, 莫重祭器置簿文書, 以張件記, 混雜書填, 事體未安, 祭器謄錄一件, 依永昭殿例, 不可不造作, 楮注紙六張·青綾花半張·粧橫絲一綫·橫間次朱紅五分·筆墨各一進排事. 手決內依. 戶曹工曹長興庫濟用監.”

53) 『永祐園遷奉都監儀軌』(1789), 分長興庫儀軌, 手本秩, 己酉 7월 일. “取考謄錄, 則各樣兩備席子等, 一從各房捧甘, 件數造作進排爲有置, 概以各年謄錄言之, 件記數文, 互相異同, 難於取一乙仍于, 茲以論報爲去乎, 今番段置, 凡諸所備席子, 使各該房, 依例預先定數, 知委分庫, 俾無臨時窘急之弊事, 各房良中分付爲只爲. 堂上手決內, 分付各所掌.”

54) 『藏書閣李王室古文書目錄』(1987).

『古文書集成』12~13(1994).

55) 崔承熙, 『增補版 韓國古文書研究』(서울: 知識產業社, 1989), 22.

56) 전경목, “고문서의 조사와 정리 방법론,” 『嶺南學』 제9호(2006), 46.

불분명하다. 반면, 약간의 변화로 고서나 고문서로 바뀔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가례를 위하여 제작한 발기 역시 마찬가지다. 발·수신자를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의례 진행을 위하여 실용성을 전제로 작성한 것이므로 문서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 예로 발기를 물품 및 인원의 현황을 정리한 장부로 간주하여 관인을 찍고 문서 행정의 증빙 자료로 이용한 기록을 찾을 수 있으며,⁵⁷⁾ 그 실물로 『出駄件記(출대건기)』와 『宣川郡俄兵酬應件記(선천군아병수응건기)』⁵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발기는 작성자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문서’가 아니라 사실성과 현재성을 동시에 갖춘 ‘기록’으로 규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발기의 형태적 특징 중 하나로 염색 종이의 사용을 살펴보자. 염색 종이를 사용하여 제작한 발기는 58건 중 25건이다. 홍색, 분홍색, 송화색, 초록색, 두록색, 청색, 보라색, 회색 등으로 물들인 종이를 여러 장 이어 붙여서 사용함으로써 매우 화려한 느낌을 준다. 발기의 용지에 대해서는 저주지(楮注紙)⁵⁹⁾ 외에 특별한 기록이 없다. 다만, 발기의 내용으로 분류해보면 주로 왕세자·왕세자빈의 의대 및 패물, 이불에 한정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해당 기록의 중요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좀 더 확실한 근거는 다른 사례에 관한 연구를 통해 찾아야 할 것이다.

57) 『嘉禮都監儀軌』(1837), 修理所儀軌, 手本, 丁酉 2월 18일. “本房熟設所用木器皿中以繕工前排有可合者取用事, 分付據捧甘是乎則, 該色書員持逐等, 傳掌件記來待, 故相考則本所進排器皿物名不同是白遣, 如干只有橫子隔板木火爐是乎乃, 年久破傷, 無一擇用者, 橫子段, 今爲各處役所, 盡爲進排事, 踏印件記來待, 則以此別無可合者, 而方今日子急迫, 一時遲滯, 極爲悚然, 依謄錄一並造作進排是乎等以, 緣由手本爲只爲, 手決內斯速造作進排.”

58) 『出駄件記』(1905~7), 奎 20664~5, 20667, 20733.

『宣川郡俄兵酬應件記』(1904), 奎 25249.

59) 『嘉禮都監儀軌』(1671), 一房儀軌, 稟目秩, 辛亥 2월 28일. “冊嬪親迎同牢私習儀及正日行禮舉行時, 議註及笏記謄書, 禮貌官各執爲旂, 執事醫女與內人, 謄書禮文書給次厚紙四張, 各差備醫女件記書給次楮注紙二張, 并以上下何如, 堂上手決依.”

위와 동일한 원문을 『嘉禮都監儀軌』(1696), 『嘉禮都監儀軌』(1718), 『嘉禮都監儀軌』(1727), 『嘉禮都監儀軌』(1744)에서도 찾을 수 있다.

<표 8> 염색 종이로 제작한 발기의 현황

내용 \ 절차	간택	별궁	육례	시상	상세 내역
간택	2	-	-	-	
복식 · 패물	5 (색지3)	13 (색지12)	-	-	• 왕세자 의대 1건: 발기1012 • 왕세자빈 의대 10건: 발기961 · 989 · 966 · 987 · 988 · 965 · 1013 · 1010 · 985 · 1186 • 왕세자빈 패물 4건: 발기1242 · 1226 · 1239 · 1229
기물 · 금침	1	7 (색지2)	-	-	• 이불 2건: 발기1083 · 1165
명단	2	-	9	19	

4. 결 론

오래 전부터 왕실 발기의 존재가 알려졌고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으나, 발기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는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등록이나 의례와 다른 발기의 자료적 가치가 부각되면서 그 제작 배경과 자료적 특성에 대해 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발기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자료로 ‘1882년 왕세자 가례’를 위하여 제작한 발기 58건에 주목하였다.

당시 왕세자 가례를 위하여 제작한 발기들은 간택부터 왕세자빈이 별궁에 머물고 육례를 거행한 뒤 시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례의 절차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발기의 내용은 간택에 참여하는 이들을 위한 상차림과 간택된 왕세자빈에게 하사하는 의대 내역, 왕세자빈이 별궁에 머무는 동안 마련된 복식 · 패물 등 각종 기물에 대한 내역, 왕세자빈이 책봉 교명을 받는 수책례 등을 수행하는 내인들의 명단, 가례 준비에 관여했던 가례도감 관원을 비롯한 내관 · 내인들에 대한 시상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음식, 복식, 기물, 명단으로 한정되며 해당 기록의 실상과 연계되는 기록이다.

발기는 완전히 같은 내용을 한글과 한자로 표기만 다르게 썼거나,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서체와 표기 등 같은 부분이 많은 ‘동일본’들이 함께 전한다. 표기의 차이를 통해 왕실의 음식·복식·기물 등의 제작에 관여한 내인들이 한글본을 작성하고, 왕실의 물품 공급을 전담하는 내관들이 내인들의 한글본을 한자로 바꾸어 썼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가례 전반의 업무를 관장하는 가례도감에서 물품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한자본 발기를 작성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즉, 발기의 제작 배경에는 왕실 물품의 조달 체계가 있었던 것이다.

주로 왕실 물품의 내역이나 참여 인원의 명단을 기록한 발기는 작성자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문서’보다는 사실성과 현재성을 동시에 갖춘 ‘기록’의 성격이 짙다. 가례의 각 절차에 소용된 물품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가례에 관여한 내인이나 내관들의 명단은 등록이나 의례 등 관찬자료에서는 보기 힘든 내용으로 독자적인 가치를 지닌다. 그러므로 왕실 의례의 구체적인 모습과 왕실 운영 체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뿐만 아니라 한글본과 한자본 발기의 존재로 인하여 왕실의 문자 생활과 문서의 작성 및 보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왕실 의례를 위하여 제작한 발기는 의례 진행의 실용성을 전제로 하는 만큼 해당 의례를 비롯하여 왕실의 운영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내용을 다각적으로 조명할 수 있도록 관련 제 분야 즉 문헌학, 의례사, 음식사, 복식사, 국어사, 서예사 분야의 학자들과 공동으로 연구하여 서로 보완해야 한다. 즉, 조선 왕실 문화를 규명하는 학제간 연구로서 발기는 훌륭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참고 문헌>

1. 원전자료

- 『王世子嘉禮膳錄』. 1책. 장서각 K2-2683.
『王世子嘉禮都監儀軌』. 1책. 장서각 K2-2678 / 규장각奎13174~13178.
『藏書閣李王室古文書目錄』.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7.
『古文書集成』 12~1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4.

2. 논문 및 저서

- 김봉좌. “조선후기 궁묘 제사 관련 한글문헌의 문헌적 특징.” 『국어사연구』 제10호 (2010). 133-272.
김봉좌. “조선시대 유교의례 관련 한글문헌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1.
김봉좌. “왕실 한글 필사본의 전승 현황과 가치.” 『국어사연구』 제20호(2015). 39-64.
김용숙. 『朝鮮朝 宮中風俗 研究』. 서울: 一志社, 1987.
박부자. “왕실발기에 나타난 복식 관련 어휘 차자표기의 한자 운용에 대한 연구.” 『국어학』 제75집(2015). 335-372.
이명은. “궁중불기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 연구 - 장서각 소장품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3.
전경목. “고문서의 조사와 정리 방법론.” 『嶺南學』 제9호(2006). 39-75.
조영준. “조선후기 왕실의 조달절차와 소통체계.” 『古文書研究』 제37집(2010). 91-121.
崔承熙. 『增補版 韓國古文書研究』. 서울: 知識産業社, 1989.
최영희. “조선시대 한글 發記의 서예사적 意義 및 궁체의 典型 모색: 장서각 소장 丙寅발기 및 壬午발기를 중심으로.” 『서예학연구』 제27집(2015). 324-362.
홍기문. 『이두 연구』. 평양: 과학원출판사, 1957.

書誌學研究 第65輯(2016. 3)

황문환, 안승준. “『정미가례시일기(丁未嘉禮時日記)』의 書誌的 考察.” 『藏書閣』 제19집(2008). 5-38.

황문환 외. 『정미가례시일기 주해』.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